

2018년도 제8차 국제공증인협회 (UINL) 아시아지역위원회 (CAAs) 참가보고서*

박형연

총무이사 겸 국제이사
법무법인 코러스 대표 변호사

1. 국제위원회의 구성

작년 참석기를 읽으신 분들은 기억할 것이다. 본인이 혼자서 외롭게 발리(Bali) 제7차 CAAs 총회를 참석하였던 것을 말이다. 우리 “남상우 협회장 집행부”가 구성된 이후 2년차를 맞아 국제업무를 등한시 할 수가 없어, 올 초에 협회장님과 상의하여 국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2018. 4. 9.(월) 19:00에 개최된 2018년도 제4차 상임이사회에서 국제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통과가 되었다. 그 목적사업은 ① UINL (국제공증인협회) 회원국 활동 및 UINL 회원국 간의 친목 도모, ② UINL 산하 CAAs 회원국 활동 및 CAAs 회원국 간의 친선 교류, ③ 공증제도의 법률선진화에 관한 사항, ④ 외국 선진 공증제도의 조사 연구, ⑤ 국제회의 개최 등이고, 위원회 정원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도록 하였다.

* 2017년도 「공증과신뢰」 통권 제10호(발행일 2017. 11. 1.)에 게재된 필자의 국제회의의 보고서(299면~308면)의 제목 “제8차 국제공증인협회 아시아지역위원회(CAAs) 참가보고서” 중 회의 개최 차수인 ‘제8차’를 ‘제7차’로 바로 잡습니다.

임기는 3년(다만, 최초 선임 위원회의 임기는 현 임원 임기와 동일)으로 하고, 내부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으로 했다. 미리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자원자를 중심으로 이날 위원이 확정되었다.

위원은 협회 임원 중에서는 박종순 부협회장과 필자가, 일반 회원 중에서는 김승열(사법연수원 14기, 인가공증인), 소삼영(연수원 17기, 임명공증인), 석진국(연수원 17기, 임명공증인), 오재창(연수원 19기, 인가공증인), 이재동(연수원 22기, 인가공증인), 안경재(연수원 28기, 임명공증인), 배영철(연수원 32기, 임명공증인) 변호사가 위촉되었다. 첫 국제위원회 회의는 2018. 5. 29.(화요일)에 개최하여, 위원장에 박종순, 부위원장에 김승열, 간사에 필자를 선임하였다.

2018. 7. 6.에는 국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8. 9. 5.(수요일)부터 9. 8.(금요일)까지 중국 시안에서 열리는 제8차 CAAs 회의에 협회에서는 남상우 협회장, 박형연(필자), 김창호 사무국장이, 국제위원 중에는 김승열, 이재동 위원이 참석하기로 하였다.

2. 중국 시안 회의 참석을 준비하며

작년 발리 회의에서 중국공증인협회(China Notary Association)가 아시아지역위원회 위원장국이 되었고, 중국은 아시아 회원국을 대표하여 국제공증인협회에서 아시아의 위원장국으로서 1년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 우리 협회가 2년 후(1년 후에는 몽골)인 2020년에 할 역할이다.

올해 국제공증인협회 회의(상임위원회: Steering Committee, 이사회: General Council)는 2018. 5.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아이보리코스트)에서 개최되었고, 다시 2018. 9. 29.~10. 2.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회의(UINL 상임위원회, 이사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1년에 2번 정도 전체 회의가 개최되는 것이다.

작년 총회(2017. 11. 11. 멕시코 칸쿤에서 열림)에서 필자가 전임자인 박은재 변호사(인가공증인)에 이어서 이사(General Councilor, 2017년에서 2019년 임기와 2020년에서 2022년 임기까지 선임)가 되어, 이사회뿐만 아니라 협회장님을 모시고 최소한 한번은 위 국제공증인협회 회의(총회와 이사회)에 참석을 해야 하지만 예산 관계상 올해 역시 아시아지역위원회 활동만 열심히 하기로 하였다.

다만, 아시아지역위원회 위원장국인 중국을 통하여 위 아프리카 회의에 대한공증인협회의 현황(Present Situation of our Notariat; 공증인법 개정 내용 등)에 관하여 알려주었다. 매년 각 아시아지역위원회 회원들은 총회 전에 위원장 국가에 중요한 활동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중국공증인협회는 2018. 6. 15. 공문을 보내 9월 아시아지역위원회는 북경이 아닌 시안(Xi'an, 회의장소: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알려왔다. 각 회원국에서 할 주제발표는 2개로 결정이 되었다. 하나는 회원국에서 최근 공증 관련 발전상황을 소개(Introduction to the development of notary-related activities in Asia)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공증활동에 관련된 정보구축(Information construction for notary activities)이었다. 회원국에서 개별준비는 하지 않지만 주제발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중국공증인협회에서 자신들의 비전을 제시하려는 주제[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발전과정에 있어 공증인의 역할: the role of notary activities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였다. 회의 장소를 상해나 북경으로 하지 않고, 실크로드의 출발지이자 당나라 등 중국 최고의 전성기인 왕조의 옛 수도인 시안(옛 장안)에서 개최하는 것을 보면서 2013년 시진핑이 일대일로의 신(新) 실크로드 전략 구상을 발표하여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경제벨트를 중국 주도로 이끌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중국공증인협회의 활동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다. 작년 발리 회의에서 중국이 기꺼이 우리의 순서에 아시아지역위원회 위원장국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 단순한 호의는 아니었던 것이다.

만일 국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위 1, 2주제를 모두 필자가 준비 발표하여야 하는데, 다행히 부위원장인 김승열 위원이 2주제를 발표하여 주시기로 하였다. 작년에 필자 혼자 참석할 경우와 달리 오랜만에 5명이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참석준비 하느라고 김창호 국장이 고생을 많이 했다. 협회 예산이 충분하다면, 국제위원회 위원들의 참가비도 모두 부담하여야 하지만, 예산상 일부만 지원을 해드렸다.

내 입장에서는 2년 후 즉, 내년에 몽골회의 다음에 한국에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음 회의에 참석하는 발리와 다른 관점에서 조금 긴장이 되었고, 그 준비 차원에서 다각도로 시안회의를 지켜보려고 마음먹었다.

3. 시안회의의 참석

가. 회의의 장소와 일정

공식회의는 2일(9. 5.~6.)이고, 3일째는 관광 일정이다. 발리 회의는 골프와 관광 일정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관광 일정만 있었다. 발리 회의와 비교하면 하루가 줄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발리 회의가 하루를 더 한 것이다. 그때는 인도네시아공증인협회(INI)에서 의욕적으로 투자관련 국제회의(International Seminar of the Indonesia Notary Association)를 개최하였기 때문이다. 장소는 중국 산시성 시안 하얏트 리젠시 호텔이었다. 하얏트 호텔은 원래 그랜드와 리젠시로 급이 구별되는데, 시안 리젠시는 규모나 시설에서 내가 가본 다른 하얏트 그랜드급 이상이였다. 땅이 크면 규모도 크다. 엄청난 규모의 호텔이었다. 도착하여 보니 시안의 신시가지에 위치해 있었고, 이곳도 마치 서울의 강남처럼 학군이 좋아서 집값이 비싼 지역이었다. 첫날 회원국 사전미팅과 환영만찬이 있고, 둘째 날이 온전히 하루 종일 주제발표와 토론이 예정되었다. 아시아지역위원회 회원국이 아닌 대표로는 국제공증인협회에서는 스페인 회장(Mr. José Marqueño de Llano)이 왔고, 프랑스 회장(DiDier Coiffard), 독일 부회장(Richard Bock)이, 아시아에서는 회원국이 아니지만 옵서버(참가 예정국)로 캄보디아 대표(Chan Sotheavy, 여성, 법무부차관)가 참석했다.

나. 첫 번째 날(2018. 9. 5.)

이번에는 1명이 아닌 5명이 참석하는 회의라서 시쳇말로 조금은 폼이 났다. 아침 9시 15분 국적기(대한항공)로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시안공항에 11시 30분에 도착한 후, 택시를 타고 시안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었다. 오후 5시의 사전미팅은 5명 중 3명 즉, 협회장, 국제이사인 필자, 국장만 참석하고, 6시 30분 환영만찬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일정이었다.

사전미팅은 세미나가 아닌 아시아지역위원회 내부 회의에 해당된다. 중국공증인협회 회장 겸 국제공증인협회 부회장인 하오 치용(Hao Chiyong)의 환영 인사말, 국제공증인협회의 회장인 Mr. José Marqueño de Llano(카탈루니아 지방 즉, 바르셀로나 출신자. 2017년~2019년 회기 회장, 호세 마르끼노)의 인사말에 이어, 아시아지역위원회 위원장이자 중국공증인협회 부회장인 왕쥬(Wang Jue)의 1년간 활동보고가 있었다.

지난번 위원장국인 인도네시아와 다른 것은 중국은 국제공증인협회 부회장 국가라서, 아시아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부회장이 맡는 것이었다. 그 다음은 일본 재무이사(Kazuo Inaba)의 재무보고가 있었다. 참고로 아시아지역위원회의 주된 수입은 국제공증인협회에서 주는 할당금, 인도네시아공증인협회에서의 기부금(전임 집행부 잔금으로 보임), 기타 수입 등이다. 예산도 주의 깊게 보게 된다. 여기까지는 평상적인 회의 진행이다.

이번 회의에 긴급제안 안건이 있었다. 항상 재무이사직(Treasurer of the Asian Affairs Commission)을 맡던 일본의 제안인데, 아시아지역위원회 위원장뿐만 아니라 재무이사도 돌아가면서 맡자는 안에 대한 사전 토론이 있었고, 이번에 그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다. 미리 6개국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재무이사 역시 6개국에서 돌아가면서 맡는 것에는 이의가 없었는데, 의장국에서 재무이사까지 함께 맡을 것인지, 아니면 전임 의장국에서 재무이사를 맡을 것인지에 대하여 토론을 통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전임 의장국에서 맡는 것으로 만장일치의 합의를 보았다.

그 다음으로 차기 아시아지역위원회 집행부(몽골에서 회장, 부회장, 중국에서 재무이사를 맡는 것)에 대한 추진작업(차기 9차 아시아지역위원회 위원장: 몽골공증인협회 회장인 Mrs. Ononchimeg Rychindorj, 부위원장은 Mr. Bayarsukh Sukhbat, 재무이사는 일본의 Kazuo Inaba, Secretary of CAAs는 필자와 매번 연락을 하고 있는 Mrs. Khaliunaa Batzorig)으로 사전미팅은 마무리되었다.

잠시 쉬었다가 환영만찬장으로 옮겨 나머지 한국 대표(김승열, 이재동)와 함께 여러 나라에서 온 대표들과 즐거운 저녁과 환담시간을 가졌다.

다. 두 번째 날

공식적인 하루의 긴 행사가 시작되었다.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하기 전에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중국 법무부차관(Xiong Xuanguo), 산시성 성주(Hu Minglang, 사전 배포된 일정에는 부성주가 오게 되어 있었는데 Governor가 직접 참석)와 회장단(각국 회장들)의 공식미팅이 있었다. 필자는 회장님의 통역으로 배석을 하였다. 인사말(법무부차관, 산시성 성주, 중국공증인협회 회장, 국제공증인협회 회장)과 덕담이 오갔는데, 중국 법무부차관의 인사말에는 중국이 미국과 견주어 세계 2강으로 자리매김하

려는 의지를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또 느낀 것은 북경에서 법무부차관이 왔다고 중국공증인협회 사람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준비활동을 보면서, 우리의 80년대 공무원들의 모습(지금도 많이 남아있다. 관료들의 특징일 것이다)을 보는 것 같았다.

협회장님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의해 발전되고 성장된 중국공증인협회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많이 부러웠던 모양이다. 사실, 우리 협회가 법무부로부터 뭐 하나를 얻어내기 힘든 것을 생각하면, 우리 공증인들이 하는 업무가 국가사무를 대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것을 나 자신도 협회 임원을 하면서 느끼다 보니, 협회장님은 더 크게 느낄 것이고 그런 부러움이 이해가 되었다.

대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 하루 종일의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주제인 각국의 공증인 협회나 국가의 공증 관련 현황을 소개하는 시간에, 내가 한국 대표로 나가서 10분간 2017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된 공증인법 개정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6개국 대표들의 발표 내용도 대부분 전자공증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아시아 공증 관련 업계에도 전자화의 바람이 거세다는 생각을 했다.

참가비에 포함된 점심 쿠폰으로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시작된 오후 세션에서는, 김승열 국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자세히 우리나라의 전자공증시스템에 대하여 10분간 설명을 했다. 김승열 부위원장은 다양한 국제 활동 경험으로 무척 세련되게 발표를 했다. 사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아시아지역위원회 총회(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보면, 아시아지역위원회뿐만 아니라 유럽의 국제공증인협회의 임원들이나 모든 참가국이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전인수격인 해석이지만 우리(필자와 김승열)가 영어를 제일 잘 하는 나라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첨언하자면 인도네시아가 우리보다 좀 더 영어가 생활화되어 있는 것은 같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국제공증인협회 활동에 열심이다. 10분씩 하는 발표이다 보니, 미리 사전에 배포된 발표문을 통하여 읽는 사람, 우리처럼 PPT파일을 준비하여 발표하는 사람, 아예 발표자(몽골 회장)는 간략하게 인사를 하고, 영어 가능한 대표(Mrs. Khaliunaa Batzorig)가 발표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다. 하루에 많은 발표를 소화하다보니, 이번에는 거의 질문이 없었다.

항상 국제회의에 참석하면 일본 분들은 정말로 성실하게 회의에 임하고, 그렇지만 정말로 영어를 못한다는 생각을 이번에도 했다. 동시통역은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국어로 이루어졌는데, 막상 아시아지역위원회 회원국인 베트남의 발표가 영어로 통역이 안 되어 사실 필자는 좀 당황했다. 국제공증인협회의 공식 언어가 영어와 스페인어, 불어인 것은 이해하지만, 아시아지역위원회 회의인데 회원국인 베트남의 발표가 영어로 통역이 되지 않는 것은 이해불가였기 때문이다. 나중에 한국 대표끼리 모여서, 중국이 역사적으로 약간의 적대적 역사가 있는 베트남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어를 모르는 우리를 무시하는 것인지 우리끼리 만나서 농반, 진반 촌평을 하였다. 과연 베트남 사람들은 자신들이 발표가 중국어로는 통역이 되지만 영어로 통역되지 않는지는 궁금하다.

아시아지역위원회 회원국의 발표에 이어, 프랑스 대표, 독일 대표, 스위스 대표 [(Roland Niklaus, 공증인 은퇴 후 국제공증인협회 중 국제협력위원회 임원(Secretary of CCNI (International Notarial Co-operation Commission))으로 온 것이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는 스위스 대표는 아니다)]가 있었다. Nik은 지난 발리에서 만난 적도 있고, 함께 발리관광도 하였기 때문에 더욱 반가웠다. 몇 명 유럽 참가자들은 작년 발리에서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 “너도 작년에 발리에 왔었구나”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에 좋았다.

사실 내 입장에서는, 국제이사로서 작년 칸쿤 총회에 데뷔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참석하였더라면 좀 더 국제공증인협회의 사람들과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자신이 국제이사의 업무를 하기 전에는 과연 우리 협회의 사정상 국제공증인협회에 적지 않은 예산을 쓰면서 외국 공증인협회와 교류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인 사람이었는데, 국제이사의 업무를 맡아 직접 활동을 하다 보니, 그 필요성을 더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나와 비슷하게 처음 협회장이 되어 국제 회의에 참석한 협회장님은, 자신이 법제이사로 있을 때 외국 회의를 참석하였을 때와 다른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다. 간혹 나에게 귀국하여 영어학원에 등록하든지, 다시 영어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농을 하셨는데, 시안회의를 통해서, 국제교류가 법무부에 대하여 우리의 주장을 피력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다.

긴 하루 종일의 주제발표가 끝나고, 아시아지역위원회 6개국 회장단의 마무리 인사말이 있었다. 남상우 협회장님은 미리 준비하신 영어 원고를 잘 소화하여 발표하셨다. 영어를 못한다는 말은 겸양의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협회장님이 우리 협회의

올해와 내년 역점사업 3가지를 국제 공증인들과 공유하셨는데, 우리들도 공유할 필요가 있어 여기다 올린다.

“첫째, 2017년부터 집필 중에 있는 공증사무처리 종합매뉴얼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이 매뉴얼이 발간되면 통일된 공증업무처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최근 10년간 변동되지 않고 있는 수수료에 관하여 현실 물가를 반영한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셋째, 전자공증 특히 올해 새로 도입된 화상공증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힘쓰고자 합니다.”

아시아지역위원회 회장들의 폐회식 인사말을 끝으로 긴 하루 회의를 마치고, 참가자 전원이 호텔 로비에 나가서 단체기념사진을 찍었다. 중간에 점심과 커피브레이크가 있었지만,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하는 회의는 피곤한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4명의 모국어를 쓰는 원군이 있어 발리 회의와 비교하여 필자에게 뜻 깊은 시간이었다.



△ 제8차 국제공증인협회(UINL) 아시아지역위원회(CAAs) 단체기념사진

중국공증인협회에서 마지막 공식행사 일정으로 공연과 저녁만찬을 준비했다. 그 만찬 장소는 시안 시내에 있는 당락궁(唐樂宮, the Tang Dynasty, Xi'an)으로, 식사를 하고 대당여황(大唐女皇, the Empress of the Great Tang)이라는 음악극을 보는 것이었다. 당나라의 여황제가 누구인가 했더니, 우리가 측천무후라고 알고 있는 중국의 유일한 여자 황제의 일대기를 다룬 공연이었다. 우리 대표들 중에 공연의 규모와 수준에 감동한 분들도 있었으나 오페라를 즐겨보는 내 입장에서는 사실 워커힐에서 하는 쇼 정도의 느낌을 받았다. 그렇지만, 큰일을 마쳤다는 안도감에서 식사는 즐거웠고, 공연도 좋았다.

라. 세 번째 날(관광일정)과 귀국(4일차)

세 번째 날 관광은 모든 아시아지역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한 것이 아니라 내 기억으로는 한국 대표들, 몽골 대표들, 일본 대표들이 주로 참석했던 것 같다. 일정은 진시황 병마용 관람, 그 다음에 우리가 당나라의 수도 장안성이라고 부르는 시안성 관람, 회족(회교도)들의 벼룩시장을 보는 일정이었다. 영어를 쓰는 가이드가 20인승 버스를 준비하여 우리를 아침부터 저녁 전까지 관광일정이었다.

필자도 회의장소가 북경이 아니라 시안이라서 좋아했던 이유는 그 유명한 진시황의 병마용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였다. 그런데 막상 병마용에 들어가 테라코타 병사들이 진열되고, 아직도 발굴중인 갱도(Pit)를 막상 보니, “대단하다!”라는 감탄 이상의 감동은 없었다. 아마 우리가 이미 병마용에 대하여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시안은 여름에는 35도를 훨씬 넘는다는데, 조금 이르지만 9월이라 조금 덥기는 하였지만 가을 기운이 역력한 하루였는데, 그 고유한 산속에 한명의 황제를 위하여 만들어진 수천의 테라코타 병사들은 삶이 무엇이고, 권력이란 무엇인가, 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소품이었다.

사실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감은 시안성 동문 방문이었다. 네모반듯하게 보존된 시안성은 막상 당나라 때 성이 아니라 명나라 때 축성된 성이었다. 그런데 성곽의 폭이 덤프트럭 2대가 교행할 정도로 넓이 15미터나 되었다. 시안이 평지라서 적을 막기 위해서 성곽의 높이보다 더 넓게 성곽을 축조한 모양이다.

관광을 마치고 우리 5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호텔근처에 있는 유원지인 곡강지(曲江池) 야외 중국집에서 저녁식사로 맥주를 한잔씩 하면서, 8차 아시아지역위원회 참가 소감들을 공유하였다. 다른 국제위원회 위원들도 다음 회의에는 참석하여 공증인협회의 국제화를 꾀하자고 덕담을 서로 나누었다. 곡강지는 경치가 수려한 연못으로 당나라 시인 백거이가 많은 시를 남긴 명소라고 한다. 모든 미션을 마치고 호텔에 돌아와 오랜만에 백거이와 이백, 두보의 시를 검색하여 보면서, 한문을 배운 세대로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다.

토요일 날은 아침 식사 후 두 대의 택시에 나누어 타고, 시안국제공항을 통하여 귀국하였다. 인상에 남는 것은 누구 높은 사람이 지나가는지 공항 가는 고속도로를 약 20분 정도 통제하길래, 우리의 70년대와 80년대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 시

안에서 대한민국 참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였다.

4. 결 론

내년 국제공증인협회 총회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다. 결국 내년에는 아시아지역위원회의 국제회의가 9월경 몽골에서 9차 아시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11월경 자카르타에서 국제공증인협회 총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국제위원회를 열어 귀국보고회를 통해 국제위원회의 활성화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대한공증인협회 임시총회(10월 13일) 등의 바쁜 일정이 있어 아직까지 국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는 좀 더 부강해진 대한공증인협회, 활발해진 국제교류를 기획하여 본다.

[붙임 1] 2018 CAAs 폐회식 대한공증인협회장 인사말(영문)

2018 CAAs (Asian Affairs Commission) Concluding Speech

Sangwoo NAM

President of Korean Notaries Association

I would like to take this time to thank Mr. Hao Chiyong, Chairman of China Notary Association and Mr. Wang Jue, Chairman of CAAs in 2018. Thank you for the commitments in providing a successful hosting of the 2018 CAAs meeting. I would also like to thank Mr. José Marqueño de Llano, President of UINL for your heartfelt support for CAAs.

First of all, I should talk about the change in the hosting country of CAAs in 2018. As you all know, CAAs in 2018 was originally scheduled to be held in Korea. But unfortunately, we cannot host the event in Korea due to internal problems of Korean Notaries Association. For this reason, CAAs has replaced the meeting order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is regard, thanks to all CAAs members.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China. Because China Notary Association has hosted this meeting very successfully in spite of sudden change.

Today, we discussed about the notary system and professional experience of each Asian country through topic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Hopefully this discussion become a stepping stone in further developing the notarization system of Asia. We, Korean notaries have learned a lot about the system of each country through this meeting. I am deeply grateful to all the notaries in each country for preparing and presenting the material.

Korean Notaries Association has three major projects that focus on development of the Korean notary system in 2019.

First, Korean Notaries Association will complete and publish the notary guiding Manual Book which we have been preparing since 2017. It is expected that this Manual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unified notary work process of all the Korean notaries.

Second, Korean Notaries Association will make efforts to revise the notary fees rule that reflect the actual prices of service that have not changed for the past 10 years.

Third, Korean Notaries Association will work hard to establish electronic notarization, especially the newly introduced image or video notarization system. We hope that these three projects will bring good results and plan to have the results reported by our next meeting.

Finally,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again in Mongolia in 2019.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thanks to all of you here on behalf of all the Korean notaries.

Thank you.

Introduction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notary-related activities in Korea

Hyung-Yeon (Rick) PARK

Executive Director of General Affairs,
Executive Direct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Korean Notaries Association

1.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Korean notary-related activities;

The amendment of the Korean Notary Act which became effect on December 24, 2017.

The last amendment of the KNA was made on May 28, 2013. Thus this amendment was made in 5 years and this revision is very meaningful and important to KNA as explained in the below. Therefore, we would like to share it with CAAs members.

2. Four Major Revision under the present Korean Notary Act.

- 1) In case of notarization of the will and certification of the meeting, such as the general meeting of the shareholders of the listed company, by attendance of the notary, the limit of the jurisdiction is moderated. (if the notary has the permiss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or the Chief Prosecutor of his district, he can do the above notary work over his jurisdiction). In the previous Act, the notary can do his work only within the jurisdiction.

- 2) We have introduced an image (video camera) certifica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s without the applicant's coming to the notary office.
- 3) We improved the regulation of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KNA.; Big change is that the representative member meeting is changed to the system of all members meeting and other small changes. Thus KNA have already revised the regulations of KNA this year after implementation of the Act.
- 4) The criminal punishment for granting or providing monetary gifts or other benefits in exchange for the introduction, arrangement, or other benefits on the process of the notarization is strengthened.
- 5) Semi-conclusion

I would like to explain the background of the above revisions. Our government, namely Ministry of Justice is very eager to introduce image or video notarization system despite many notary and KNA are reluctant to introduce the above system rapidly. This is partly because Korean government is interested in revitalizing e-government and the Internet technology.

Revision Number 4) is made by the long effort of KNA to demand the strengthening of punishment against the wrongdoer of the notary-related activities. KNA has already established investigative committees for a long time and has investigated and accused criminals to make the clean notary society.

3. Competition and the limit of Jurisdiction (Revision Number 1)

The notary can work in his jurisdiction but big notary offices want to expand his working area outside his jurisdiction especially when a large city is adjacent to a

small city.

The notary office of the large city such as Seoul insists that the limit of the jurisdiction should be abolished but the notary office of the small city insists that the jurisdiction limit system should be sustained.

The result is the compromise that if the notary has the permiss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or the Chief Prosecutor of his district, he can do the above notary work over his jurisdiction. We, KNA are working with the government to ensure that the compromise (the relevant regulation) remains fair between the notary of the big cities and the notary of the small cities.

4. Image or Video Notarization System (Revision Number 2)

The remarkable change of our notary system under the revised Act is to adopt the online notarial procedure for certificating the electronic documents (notarial instrument) via video conference between the applicant for the notarial certification and the designated notary (not all the notary but the designated notary can use the above system). The below Article of the revised Act is suspended by the end of 2018 to prepare and implement the new system which is finally implemented on June 20, 2018.

For preparing the above system, Ministry of Justice should solve some technical problem to check and confirm the identity of the applicant by the notary through the online notarial procedure. For this, Ministry of Justice consult and cooperate with the other Ministry of Government, namely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who manage and supervise the identification card of all the Korean Nationals. Also Ministry of Justice has prepared the computer-online program and internet site ((<http://enotary.moj.go.kr>)) to ease the online notarization.

Thus KNA already has practical meeting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several times.

Though the System is implemented on June 20, 2018, we believe that the small changes and detailed developments are required to activate the video notarization to the public who want to use the new system.

In the next section, my fellow, Richard will introduce the Electric Notary System of Korea and its Current Issues and Future Prospectus.

For your reference, I would like to quote newspaper article below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our new System.

[LAW TIMES 2018. 6. 18. REPORT]

From the 20th June 2018, 'image notarization' system will be implemented to receive notarization by internet video call anytime and anywhere. There will be an 'online notarization era' where there is no need to search for a notary office.

The Ministry of Justice said it will implement an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otary Public Law from June 20, 2018.

The image notarization system is a system to face notary public online and receive electronic notarization without visiting the notary public office.

A notarization applicant can access the notarized e-notarization system homepage (<http://enotary.moj.go.kr>)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face a notary public by using a web-cam or a smart phone. It can also be used through mobile application 'convenient notarization system'.

The previous notary act, which is revised at the end of 2017, has no provision that it can receive a notarial remotely through a picture, so that even when using the electronic notarization system, it is inconvenient to attend the notary office once and face the notary in person.

According to the new scheme, a notary will write an authentication statement through an electronic notary system, digitally sign it, and register a notarized document. The client receives an electronic notarized file via e-mail or the like. Since the whole face-to-face process is recorded and videotaped, the notarized image can be used as evidence for future disputes. In ord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image notarization, the Ministry of Justice has used the identification verification system for the first time as a government agency.

Thank you.

* This article is can be modified on presenting at the Xian conference for the easy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However, I hope that this article is delivered to the members of CAAs in advance to understand the recent development of Korean notary-related activities.

Electronic Notary System of Korea and its Current Issues and Future Prospectus

(Richard) Sung Youl KIM

Vice-chairman of International Affairs Committee
of Korean Notaries Association

I. Electronic Notary System in Korea

A. Introduction of Electronic Notary System in 2010

Authentic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Pending issues: Still be physically present before Notary Public

B. Visual Electronic Notary system in June 20, 2018

Visual Electronic Notary System

Verification of identity of applicants

C. On-line electronic Notary system

Verification of identity by computer or smartphone

Advantages

1. Applicant in the territory where no Notary Public is located
2. Applicant residing outside of Korea
3. Cost-effectiveness

II.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 Articles 66-5 to 66-9 of Notary Public Act

Article 66-5(Authentic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① The authentica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 shall be made by any of the following methods.

1. A method by which an entrusted person can electronically sign an electronic document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nd attach the electronic information to the electronic document containing the information
2. A method of electronically signing an electronic document to make it known to the trustee or his agent and then attaching the electronic information to the electronic document

② When certifying an electronic document, the designated notary public affirms that the contents of the electronic document are authentic in front of the consignee (including in front of the Internet image device when using the Internet image dev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66-12) Or if the electronic signature is verified, the electronic signature of the affidavit shall be attached to the electronic document.

③ The provisions of Articles 25 to 3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ertification under Paragraph 1.

④ Article 25, Article 29, Article 32, Article 33, Article 57-2, Paragraphs 2 to 4 and Article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oath certification under Paragraph 2.

Article 66-6 (Certification of Electronic Document)

① A designated notary may collate the electronic document with the document to be electronicized and, if they agree with each other, give the certification of Article 57 (2) to the electronic document.

② Articles 25 to 33 and Article 66-1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ertific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Article 66-7 (Electronic Signature of Designated Notary)

In the case of granting certification to an electronic documen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66-5 and Paragraph 1 of Article 66-6, the designated notary public shall electronically sig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document and the information attached thereto, And shall affix the information that can be verified electronically to the corresponding electronic document.

Article 66-8 (preservation of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s, etc.)

① A designated notary who has granted certification to an electronic document pursuant to Paragraphs 1, 2 and 6, Paragraph 1 of Article 66-5 shall preserve the information that confirms the identity with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authenticated electronic document.

② The entrusted person may request the designated notary to keep the electronic document containing the same information as the electronic document which has been certified according to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66-5 and Paragraph 1 of Article 66 .

Article 66-9 (provision of authentication information, etc.)

① A person who has proved that he / she has a legal interest in the contents of the entrusted person, the successor or electronic document, and the authenticity and existence thereof, may request the person notified the designated person as follows.

1. Proof that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document held by the applicant an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document of Article 66-8 (1) are the same

2. Provision of the same information as electronic documents kept pursuant to Article 66-8 (2)

②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 may be made in such a way as to give a document proving the contents of electronic documents, etc. kept by a designated notary public.

③ The designated notary shall, in the case of electronic certification or information provision pursuant to Paragraph 1, take the measures of Article 66 -7.

B. Article 38-3 of the Presidential Enforcement Decree of Notary Public Act

Article 38-3 (Certification of Electronic Document)

① The authentic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under Article 66-5 (1) (1) of the Act shall be made by a person entrusted to the designated notary public in front of the designated notary public (in the case of using the Internet image dev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66-12 of the Act, Let the document be digitally signed.

② A designated notary shall comply with the standards set forth by the Minister of Justice in relation to matters specifi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resolution

2. operating system

3. In addi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6-12 of the Act, matters necessary for the certific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③ In accordance with Article 66-12 (2) of the Act, when a designated notary certifies an electronic document by means of an Internet image device, it shall pass all of the following verification procedures in order to prove that the entrant or his agent is correct.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electronic notarization system”) develop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pursuant to Article 66-11 of the Act shall be submitted electronically. that. In this case, the Designated Notary shall cause the entrusted person or his agent to obtain the authenticity confirmation through

the computerized organization such as the verification system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card pursuant to Article 58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2. Authenticate yourself by means of a certificate, a mobile phone or a method prescrib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④ In the event that an agent requests authentication of an electronic document using the Internet image dev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66-12 of the Act, the designated notary shall present the certificate certifying his / her proxy by mail or submit it electronically using the electronic notary system .

⑤ When an agent submits a certificate to prove his / her authority in electronic form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the designated notary shall make his / her entrusted person perform digital signature using the electronic notary system.

⑥ The designated notary can refuse the authentica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 using the Internet image device unless it is appropriate to pass the identity verification procedure using the Internet image device. In this case, the designated notary public shall notify the requestor or his agent of the reason for the rejection.

III. Enhancement of Credibility of the Electronic Notary System

- Verification of Identity of Resident Registration Card or Driver's License
- Taped or Video-taped of the Visual Electronic Notary Process

IV. Process of Electronic Notary Proceeding

- ID / PW Login
- Verification through smartphone, etc.

- Verification of Identity of ID Card
- Visual electronic Notary System through on-line Conference before Notary Public

V. Procedure

- Login on the electronic Notary system
- Verification of Identity
- Review of documents and real-time interview with applicants by Notary Public
- Preparation for Notarization of documents, etc.
- Issuance of the notarized electronic docu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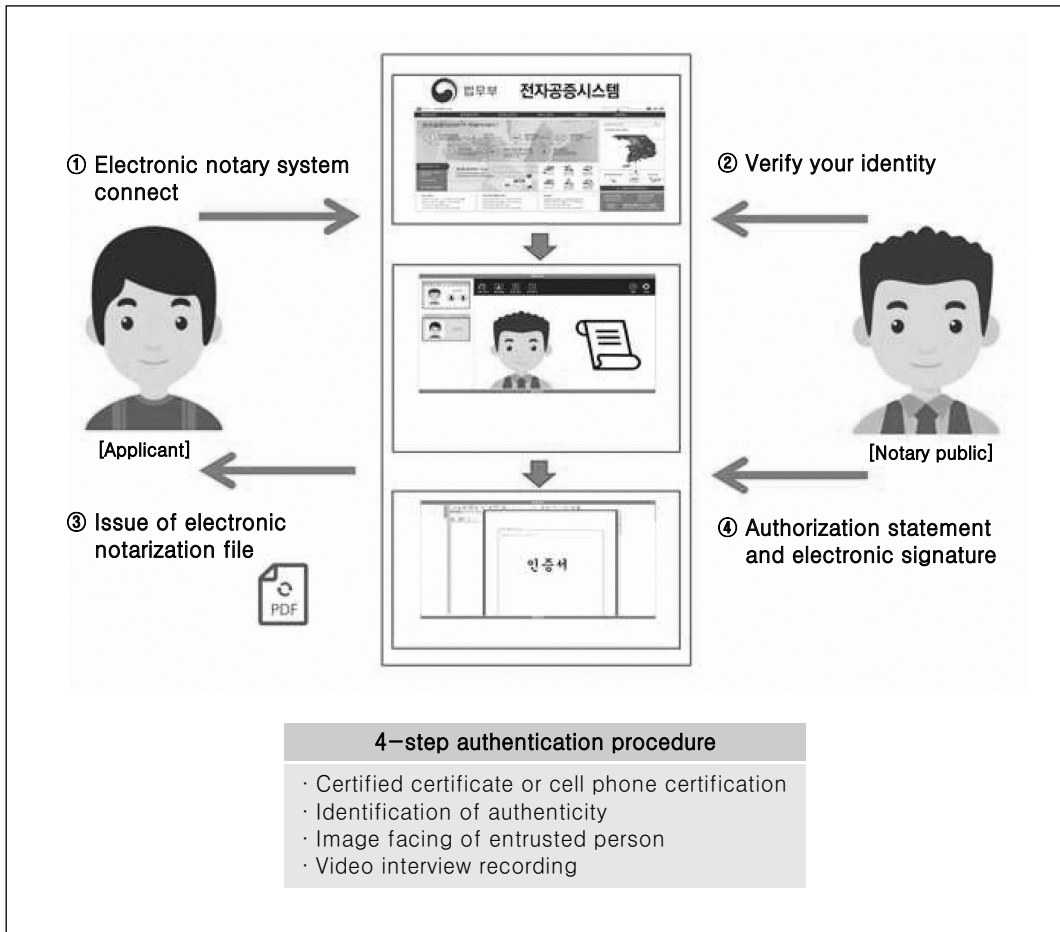
VI. Pending Issues

- Expansion of the scope of Electronic Notary system
- Update of the Electronic Security System
- Supervision on the Electronic Notary system, including Notary Public

VII. Vitalization and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Business of Notary Public

- Mediator, Arbitrator in the online dispute resolution Process
- Outside Judge(supplementary)

[Diagram]



Thank you. 